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6.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년 3월 14일

나. 발 의 자: 김재진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19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 3.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

조~제10조)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업무위탁,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발달과 독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 도서구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서점’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13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토결과,
 - 도서정가제 시행 등으로 도서 반값 할인 등과 유통혼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들은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여 지역서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독서문화 확산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

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서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9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14일

발 의 자 : 김재진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나.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다.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 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업무위탁,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제15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나. 입법예고 (2019. 3. 11. ~ 3. 15.)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사업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담당국장

2. 영등포구의회 의원

3.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관계자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